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 병호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NGO센터 기능 (안 제4조)
 - 위탁 근거 마련 (안 제5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 센터의 운영 (안 제6조 ~ 제10조)
 -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 (안 제11조)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NGO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NGO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NGO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NGO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금번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준비 중인 NGO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NGO센터가 설립·운영될 경우 필요한 조례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